소 장

원 고 1. 이옥선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 (원당리) 가새골길 85

- 2. 김군자
- 3. 김순옥
- 4. 유희남
- 5. 강일출
- 6. 정복수
- 7. 박옥선
- 8. 김외한
- 9. 김정분원고 2 내지 9의 주소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 (원당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6층

담당변호사: 홍장미

(전화: 02-523-9995 팩스: 02-523-9905

이메일: yullaw@daum.net)

피 고 1. 박유하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군자동,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집현관 714호

2. 정종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48-18 (서교동) 뿌리와이파리

제출자:법무법인 율, 제출일시:2014.06.17 09:42, 출력자:박유하, 다운로드일시:2015.03.15 18:14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望程。

열립용

제출자:법무법인 을, 제출일시:2014.06.17 09:42, 출력자:박유하, 다운로드일시:2015.03.15 18:14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1931. 9. 18 만주사변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1945년경까지 일본군이 군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각 점령지역에 설치된 군위안소에 사기, 협박, 납치 등의 방법에 의해 끌려와 군인들로부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여성들입입니다.

피고 박유하는 현재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 (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합니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피고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한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의 사업주입니다.

2. 소의 취지 및 목적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 해배상청구

원고들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있는 군위안소로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생활을 강요 당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전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국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 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으 며,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료) 피해자 중 2014년 현재 단 55명만 생존하고 있어 매우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유하는 원고들의 이러한 고통은 외면한 채, 2013. 8. 12.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뿌리와이파리, 2013. 08. 12., A5, 148*210mm, 328쪽, ISBN 9788964620304) (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합니다.)를 출판하여, 원고와 같은 '위안부'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간 역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해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 자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사실은 UN 산하 인권위원 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심지어 1993년 일본국도 고노담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유하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대중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의 대표인 피고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여, 피고 박유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박유하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정종주에게 민법 제760조에 기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피고들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목차	페이 지	명예를 훼손한 표현	문제점
제1부- 제 1 장 -1. 제1부- 제 1 장	19쪽 8줄 19쪽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에 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를 마치 일본을 위해 애 국하는 존재였다고 주장
세 1 경 -1.	11줄	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1부- 제 1 장 -1.	23쪽 2 줄	그 업자는 군인의 의뢰를 받고 위안부들을 모 았다고 말한다.	업자의 인터뷰내용은 군이 오히려 개입했다는 증거로써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1부- 제 1 장 -1.	25쪽 3줄	중언자의 대다수가 이런 식의 유혹을 받고 집을 떠났다.	구체적 수치 제시 없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제 1 부- 제 1 장 -2.	31쪽 19줄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자신에 대한 궁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을 위해 애국했던 존재라고 전제한 후, '위안부'로서의 역할이 일본군 '위안부'에게 삶의 긍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주장합니다.

제 1 부- 제 1 장 -2.	31쪽 21줄	"싱가포르 근처에는 거의 6000명의 가라유키 상이 있었고 1년에 1000달러를 벌었는데, 그 돈을 일본인들이 빌려 상업을 했"(232쪽)다는 이야기는 해외의 가라유키상들이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 부분에서 해외의 가라위상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개념인데, 마치 수입이 좋았다는 것으로 그들이 일본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할수도 있었다고 단정하여말하고 있습니다. 수입이좋았다는 부분 역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않고 있습니다.
제1부- 제 1 장 -2.	33쪽 7줄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 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 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 인 창기를 직접 비교하 는 문장으로, 강제성이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의 성격을 무시한 표현 입니다.
제1부- 제 1 장 -2.	37쪽 19줄	말하자면 아시아 각지에 존재했던 매춘시설이 모두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은 아니다. 여러 종류의 '공창'과 '사창'이 존재했고, '일본군'이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병사들이 이용한 것은 기 본적으로는 군이 허가한 '공창'뿐이었다고 보아 야 한다. 또 중국 등 전쟁을 한 점령지에는 여 성에 대한 '강간'도 많았지만, 이런 식의 '공창 '에 있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성들을 똑같이 '위안부'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강제로 공창에 가게 된 자들은 운이 좋으므로 '위안부'가 아니라는 것인가? 이 책 p36에서 저자는 민간인도 이용하는 위안소는 공창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끌려간 여인을 '위안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모순입니다.
제1부- 제 1 장 -2.	38쪽 4 줄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 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 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대다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1부- 제 1 장 -4.	48쪽 2줄	'정신대'동원과 '위안부'동원의 풍경은, 예외로 오비는 증언을 제외한다면(제외하는 이유는 소 수이기 때문이다.) 확연히 다르다.	증언의 주체가 정신대 동원에 의하지 않은 경 우 당연히 다르게 묘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만 가지고 정신대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 니다. 오히려 정신대 동 원의 풍경이 '가족들이 울었다'라고 묘사되는 점

-1.	성격을 가짐을 것으로도 해석 습니다. 또한 정 선부 '위안부'가 는 아니라는 점 는 아니가 있는 십니다. 일본군 상고 이 아닙니다. 일본군 상고 이 아닙니다. 3이 나는 시작 전우 신우 수자가 너는 외적 전우 신다는 표현으로
## ## ## ## ## ## ## ## ## ## ## ## ##	있습니다. 위안부'를 남편 나는 주부에 비 선은 근거 없는 일본군'위안부' 난던 시간들 중 일)을 평화로 나고 표현한 것 있습니다.

			수 없습니다. 또한 '위안
			부'제도 자체가 국가와
			군대, 그리고 군인들의
			잘못된 성관념과 폭력으
			로 만들어진 것으로, '위
		상대하는 '위안부'란 처음으로 자신의 앉을 자	안부'들이 사회의 차별적
		리를 '양지'에 내받은 일이기도 했다.	인 시선을 받게 된 이유
			도 거기에서 찾아야 함
			에도 오히려 양지에 들
			어오게 되었다는 표현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군인의 증언으로 일본군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	'위안부'들이 정신적 위
 제 1 부-		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	안자로서의 역할을 인지
제 2 장	61쪽	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	하고 있었고, '위안부'들
-1.	18줄	적 '위안'자로서의 역할- 자기 존재에 대한 (다	이 자신의 역할에 긍지
'-		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	를 느꼈다는 표현은 인
		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응모했을 때로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	
제1부-	62쪽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업자의 증언으로써, 업자
제 2 장	12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	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
-1.	_	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	된 것입니다.
		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	
		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소 그리티 조기계
		이 소설은 '위안부'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소설을 근거한 주장에
제1부-	0.4 **	동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동은 군인이 맡았다	
제 2 장	64쪽	는 것, 군은 이들을 군부대가 주둔하는 '같은	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
-1.	8줄	시'다른 지역에 있는 '여관'이라 이름 붙은 위	설의 내용을 사실로 주
		안소로 이동시켜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려	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
		준다.	류입니다.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용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	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제1부-	65쪽	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	했다는 사실은 작가가 만
제 2 장	11줄	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이었기	들어낸 허상에 바탕한 것
-1.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으로 명백히 허위의 사실
		에 전 기 시 당스 역을 T 첫 청년	입니다.
			-
제 1 부-	66쪽	이렇게 말하는 위안부는, "자꾸 배신감이 들어"	이 증언을 통해 일본군

제 2 장 -1.	9줄	라면서도 "지금도 이 사람이 안 잊혀져" 라고 말한다.	'위안부'가 일본 군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도출 할 수 없다. 본 장에서 저자는 일본군 '위안부'들 과 일본군인들 간에 사랑 과 평화가 존재했음을 주 장하기 위해 단편적인 중 언들만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제1부- 제 2 장 -1.	67쪽 12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 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중략 …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 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명 백히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일본군과 평화 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 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은 폐하려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하여 해석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 고 있습니다.
제1부- 제 2 장 -1.	68쪽 2줄	말하자면 그녀들이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버리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문제'삼을 것으로 여겨진 '사회'의 억압이다. 그건 그녀의 기억들이 '피해자로서의 조선'에 균열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는 무의식적 양해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안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기억들을 무화시키고 망각시키는 것은 그녀들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니었을까.	설사 저자의 말처럼 피해 자 들이 당시 일본군과의 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다 고 할지라도 그러한 감정 이 위안소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둘은 별개의 문제이고 위 안소에서 경험하였던 고 통스러운 순간들이 단편 적인 순간들에 의해 잊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더 폭력적입니다.
제1부- 제 2 장 -1.	68쪽 13줄	"나뿐 군인은 말도 못 하게 나쁘지만 좋은 군 인은 같이 울기도 하고 자기들도 천황 명령이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 증언이야말 로 위안소의 실태에 가장 가까운 것이리라. 그 런데도 이 20년 동안 "어떤 군인은 달려들지 않고 젖통만 만지다가 가는 애들도 있었다."는	위안소의 존재 자체에 강 압과 폭력이 전제되어 있 음에도, 일본군 '위안부' 와 일본군 모두를 피해자 로 서술하는 저자의 저술

		기억은 그저 묻혀 있어야 했다.	을 갖고 있습니다.
제 1 부 – 제 2 장 -1. 제 1 부 – 제 2 자	72쪽 14줄 73쪽	기억은 그저 묻혀 있어야 했다. 앞서의 센다는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권태감을 풀어주기 위해 부대가 주관해서 운동화를 열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위안부들이 운동회를 몹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중략 … '위안부'들의 순수한 기쁨의 기억을 외부자들이 소거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불가능했던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대리고향이자 가족이었다. 그런 특공대의마음을 받아주고 동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도	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들이 운동회에서 기뻐했다는 센다의 말을 인용한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해자 의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 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 문입니다. 당시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는 명백히 억압, 폭 력, 권력 관계에 있었지 가족 관계에 있지 않았습 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제 2 장 -1.	8줄	위안부들이었다. 그러나 피해기억만을 필요로하는 한 "참 안됐"다고 말하는 연민의 기억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장교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허위 사실을 근거 로 하여 '위안부'와 일본 군이 대등한 동지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 있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1 부 – 제 2 장 -1.	74쪽 9줄	일본 여자하고 조선 여자"이고 "현지 여자는 주로 병정들이 상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114쪽)한다는 식으로 계급화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가장 하위에 놓여 성과 생명을 국가에 바쳐야 했던 식민지의 '여성'과 병사들이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 병사들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상정하고 있습니 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 실입니다.
제 1부- 제 2 장 -1.	75쪽 6줄	여기에서 속아서 왔다면서도 "군인들이 총알 맞는 것"과 위안부가 된 것"을 그저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간주하고 군인을 원망하지 않는 위안부가 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식민지가 된 지 오래인 땅에서 자라나 자신을 '일본'의 일원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성은 어디까지나 동쪽으로서의 '군인'일뿐 적국으로서의 '일본군'이 아니다. 그녀가 일본군을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불행한 '운'을 가진 '피해자'로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표할 수 있는 것도 그녀에게 그런 동지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로를 일본의 일원이라 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작가의 억측입니다.
		31 71 (작가의 억측입니다. 즐거웠고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당시 의 생활이 상쇄될 수는
제 1부- 제 2 장 -1.	76쪽 1줄	혹독한 체험을 한 이들에게도 '즐거웠던'순간은 없지 않았고, 군인에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정 신적 교감을 나누는 '위안부'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 로 이동해야 했던 '개미'같은 처지임을 서로 민 감하게 감지한 고독한 남녀이기도 했다.	없습니다. 여기서 '이동' 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 당시 자발적으로 '위 안부'에 갔다는 여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명예훼손적인 서술입 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 분에서도 일본군과 피해 자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 음을 전제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1부- 제 2 장 -1.	77쪽 17줄	군인들과 위안부들이 어울려 말이나 자동차에 타고는 "어른애들마냥" 놀았던 체험을 이 할머 나는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한다.	중언자가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 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1부- 제 2 장 -1.	79쪽 9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양쪽 다, 국민동 원이라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함께 움직여진 장기말이었다. 그들은 둘 다 성과 생명을, 그것 을 담는 신체를 '국가를 위해'바쳐야 했던 한 마리 '개미'들이었다 중략 … 그들은 함께 국가에 의해 고향을 멀리 떠나 타지로 '이동'해 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피해자들이 자발적 으로 위안부에 갔다는 것 으로 비추어 지기 쉬운 명예훼손적인 서술을 하 고 있고, 당시 '국가를 위 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다는 서술 역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 합니다.
제1부- 제 3 장 -1.	95쪽 9줄	그녀에게는 위안부 체험보다도 귀환 체험이 더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증언을 왜곡하여 허위 사 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1부- 제 3 장 -1.	98쪽 1줄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들의 중 언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적'의 관계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중엔 스스 로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업자가 된 이들도 있 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패전이란 우선 그	조선인 '위안부'들도 '위 안부' 피해자임에도 불구 하고 다른 국적의 '위안 부'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가해자의 역할에 있었다

		동안의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잃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어도 '간호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군과 함께 쉽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못한 것	
		은 일본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돈을	
		벌었던 경우에도 이들은 모든 돈을 잃을 수밖	고 주장하는 것은 '위안
		에 없었고, 그건 그들이 일본의 점령지에 나가	부'문제의 본질을 흐리
		있었던 결과로 일본과 함께 현지에서 쫓겨 달	기 위한 의도를 바탕으로
		아나야 했던 '준일본인' 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가난'은 업주들에게 노예	의 문제가 아닌 평가의
		같은 착취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문제인데 견해 표명이라
		편으로는 '일본의 패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	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제로 식민지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일본인과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조선인 등 '일본 제국'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러	판결의 판시에 따를 때
		운 일본의 패전을 맞아 대부분 몸만 빠져나와	명예훼손적 서술에 해당
		야 했고, 돌아온 각각의 '조국'에서 오랫동안	합니다.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일본인, 대만인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다.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	
		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이 문장을 통해, 저자는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1부-	99쪽	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	전쟁을 수행한 일본군인
제 3 장	5줄	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	과 동일하다고 취급하고
−1 .		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
		'피해자'라고 해도 ' 제국의 일원' 이었던 이상 피	다.
		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어쩌면 그들의 '죽음'은 '일본인'에게만 허용된	
		의무이자 긍지의 표현이었을 수 있다. 아무튼	위 서술은 굉장히 횡성수
		이런 상황이 확인되는 한 일본군이 패전 직후	설하고 한 번만 읽어서는
제 1 부-	101	조선인 위안부를 무조건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
제 3 장	쪽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신을 '일	는데, 이런 식의 서술 방
-2.	ㄱ 21줄	본인'으로 믿었던 일부 조선인이 일본군처럼	식의 본 책에서 자주 등
		자결을 택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	장하며 이러한 서술을 통
		· 안부의 죽음'으로 알려진 사진은 폭격에 의한	해 당시 존재한 사실을
		것이거나 '일본인 위안부'일 가능성이 높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			
제1부-	102	전쟁터의 극한상황에서 군인이 조선인 위안부	저자는 앞서 군인과 '위

제 3 장 -2.	쪽 14줄	를 버리고 갔다 해도, 그 또한 대상이 '조선인' 이어서라기보다는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에고 이즘'이거나 '위안부'집단보다는 '군인'집단을 더 우위에 둔 차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안부'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서술해 놓고 다시 말을 바꾸어 군인 집단을 더 우위에 둔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저자가 얼마나 일관되지 못한 서 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1부- 제 3 장 -2.	1 0 3 쪽 20줄	실제로 위안부들이 얼마나 귀환할 수 있었는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 이들 의 숫자가 적은 것은 울 앞에 나타나야 할 만 큼 피해가 컸던 이들인 게 아닐까. 다들 이들 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은 어렸다는 이야기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이가 많으면 피해가 적고 어리면 피해가 컸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장이며 작가의 왜곡된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를 당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더 피해가 큰 사람들은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저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은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동 문제해결 상황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본 책을 집필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제 3 장 -2.	104 쪽 5 줄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아닐까.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다 생명을 잃은 이들 - 말없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일본이 사죄해야 하는 대상도 어쩌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언어와 이름을 잃은 채로 성과 생명을 '국가를 위해'바쳐야 했던 조선의 여성들, '제국의 위안부'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 당한 피해를 '국가를 위해'바친 것, 그리고 피 해자들을 '제국의 위안부' 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로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 2 부 – 제 1 장 -2. 제 2 부 – 제 1 장	1 1 1 쪽 15줄 1 1 1 쪽	'조선인 여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반도 출신 일본 여성-제국 치하 국민의 자격으로 군인에 대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존재였다. 위안부에 '조선 여성'이 많았던 것은, 다른 이 유도 있지만 우선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정대협은 '차이', 다른 지역 여성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배제하고 똑같은 피해자로만 설명한다고 비난을 하고
-2. 제2부- 제 1 장 -2.	18줄 112 쪽 1 줄	대적으로 가한한 역정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예외는 있었겠지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갖고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이 일본 제국의 국 민이었다는 전제를 기초 로 한 사고방식은 일본 군 '위안부'및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일병탄은 무효 라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제2부- 제 1 장 -2.	1 1 2 쪽 15줄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 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않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특수 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가난하여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 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제 2부- 제 1 장 -2.	1 1 2 쪽 21줄	위안부 중에 조선인 여성이 많았던 것은 식민 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이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저자는 일본 정부 및 일 본군의 개입과 책임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제2부- 제 1 장 -2.	1 1 3 쪽 2 줄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안부들은 폭격으로 사망한 이들이 오히려 소수이고 대부분은 귀국했거나 현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중에 일본군의 도움으로 귀국한 이들도 있었 다는 사실도 정대협의 설명은 말하지 않는다.	
제2부- 제 1 장 -2.	1 1 5 쪽 11줄	하지만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정대협은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바꾸거나 전시내용을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일 본군위안부, 종군위안부, 정신대를 명확하게 구분 하여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https://www.womenand war.net/contents/general /general.nx?page_str_me

			<u>nu=040701</u> 참조)
제2부- 제 1 장 -3.	1 1 6 쪽 15줄	예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포주들은 위 안부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갈취했고, 일하기 싫거나 아플 때도 성노동을 강요했다.	예외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피해를 받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이 있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주는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2부- 제 1 장 -4.	1 1 8 쪽 15줄	미봉책'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박물관'인 이상 미봉책의 내용이나 상당수의 위안부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사실도 말해야 옳다.	보상금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는 62명인데 이 를 '상당수의 위안부들' 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 제가 있습니다.
제 2부- 제 1 장 -4.	1 2 0 쪽 19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 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매춘이라는 표현을 계속 적으로 사용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매춘이란 개 념을 적용하는 것은 악 의적인 것입니다.
제 2부- 제 1 장 -5.	1 2 1 쪽 16줄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돌아왔다고'고 한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함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가정적 상황을 전 제로 하여 일본군 '위안 부'의 생각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 2부- 제 1 장 -5.	1 2 1 쪽 21줄	거의 10년 전 일이지만, 위안부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혼자나와 사는 '위안부'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개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나눔의 집이싫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착오로 일본 군인과 헤어지게 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증언에 대한 구체적 출처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눔의 집을 싫어하는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군인과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마치 '소거'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제2부- 제3장	128 쪽 2 줄	우선 그녀는 자신이 '좋은 집안'출신이라는 것 을 강조한다.	저자는 애니메이션 <소 녀 이야기>를 비판적으 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제2부- 제3장	129 쪽 4	그리고 소녀를 보낸 직접적인 주체가 마을사람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는 하지만, 증언	애니메이션 내용의 실제 주인공인 故 정서운 할

	줄	에 나오는 이야기-소녀가 '자청'했다는 사실 은 사용되지 않는다.	머니는 자신이 좋은 집 안 출신이라는 것을 강 조하지 않으며 자신을 다른 '위안부'와 다른 존 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또한 저자는 '자청'했 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故 정서운 할머니가 일 본군'위안부'로 된 계기 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자청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제2부- 제3장	1 3 0 쪽 17줄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인과 함께 아편을 사용하는 경우에 아무런 근거 없이 아편 사용의이유를 성적 쾌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 제3장	1 3 0 쪽 21줄	물론 이 위안부가 해방 후에 '밀수'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야기되지 않 는다.	저자는 책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기재하 여 故 정서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밀수에 대한 구체적 증 거 또한 제시하지 않았 습니다.)
제2부- 제3장	131 쪽 4 줄	2012년에 '위안부'대신 '성노예'라는 단어를 공 식적인 명칭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당 사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성노예를 자신의 위안 부로서의 경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성노예라는 단어를 거려하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단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때문입니다.
제2부- 제3장	1 3 4 쪽 13줄	그러나, 70세가 되어가도록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깊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직시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 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제 2 부 – 제 4 장 -1. 제 2 부 – 제 4 장	137 쪽 3 줄 137 쪽 6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 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 를 맺고 있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위안부'를 군인과 동지 적인 관계라고 하여, 피 해자인 '위안부'를 가해 자의 지위로 보는 것은

-1.	줄		문제입니다. 또한 '일본
제2부-	138	그녀들은 전시에 이미 간호부 로 일하고 있었	제국에 대한 애국', '간호
제 4 장	쪽 6		부'란 표현은 근거 없는
-1.	줄	다.	주장입니다.
			이동은 강제성을 배제한
			개념을 배제한 단어로
		리기 마레 '이시ㅂ'게ㄷㄴ 그레 시중이 되되고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러
제2부-	140	다시 말해 '위안부'제도는 근대 이후의 정치적	한 단어의 악의적 사용
제 4 장	쪽 2	인 면이 아니라 근세 이후 일본의 문화적 전통	으로 마치 일본군'위안
-2.	줄	과 근대 이후의 여성들의 생계형 '이동'에서 그	부'가 생계의 이유로, 그
		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리고 자발적으로 종군했
			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소설 「메뚜
			기」의 내용 다음에 나
			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제2부-	1 4 5		을 살펴보면, 강간을 당
제 5 장	쪽	'위안부'들은 이렇게 '무상'노동 도 강요당했다.	하는 것인데, '무상'노동
-1.	14줄		이란 표현은 사용하여
			'위안부'를 노동자로 호
			도할 수 있는 문제가 발
			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	
제2부-	158	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	일본군 '위안부'들이 원
제 5 장	쪽 7	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서 갔다는 식의 의견
-4.	· 줄	위안부를 하게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	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
		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2부-	160	다.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세 2 구 ⁻ 제 5 장	T 0 0 쪽	오이더 그녀들의 미요는 배군구도시의 미요가	
~4.		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7.	102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	일본군 '위안부'의 내심
		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	의 의사를 애국심의 발
제2부-	160	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로서, 그녀들에게	로라고 포장하고 있는
제 5 장	쪽	허용된 긍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	부분입니다.
-4.	18줄	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	
		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제3부-	173	그리고 "매일 3,4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제 1 장	쪽	의숙한 '수십 명'과는 많이 다르다.	조선인 '위안부'이 매일
-2.	18줄	17 2 180 72 617—7.	수십 명이 아닌 3,4명의

			군인을 상대했다고 하여
			그 피해와 고통이 줄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는 '위안부'에 대한 그릇
			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레이터			군의 직접적인 책임을
제3부- 제 1 장	175	고노 담화에 대한 해석 부분	부정하고 있는 잘못된
	쪽	고도 김와에 대한 해석 구군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습
-2.			니다.
			일본 정부가 기금 조성
제3부-	178	 '정부'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금'이었다. 다	에 주도했다는 사실을
제 1 장	· , 6 쪽 6	시 말해 '기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근거로 일본 정부가 책
-3.	~ 줄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만들어진 것이다.	임을 지기 위해 기금을
5.		- 구구의 크리핀 기가 비해 브린기인 次기기.	만들었다는 주장은 논리
			성이 결여된 주장입니다.
			송신도 할머니의 발언을
제3부-	184	그런데, 같은 광고에서 재일교포 송신도 할머	
제 1 장	쪽	니는 "위로금(見舞金)을 받으면 주위 일본 사	의식한 발언이라고 근거
-5.	· 11줄	람들이 경멸한다"고 말한다 이하 송신도 할	없이 주장하는 등, 주관
		머니의 발언에 대한 저자의 의견	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
		E 그들이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다.
제3부-	184 쪽	실은 '사죄와 보상'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	한일협정의 성격을 오해
제 1 장		라 1965년의 한일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은	시키는 부분입니다.
− 5.	22줄	다 1900년의 선물법생물 중에 접적 작품은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八八七 丁七日勺勺 .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	
		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
제3부-		(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	임을 부정하고 민간인의
제 1 장	쪽 8	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6 .	줄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	
		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	
		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	
		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 로 물	
		을 수밖에 없다.	
제3부-	207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는 명백
제 3 장	쪽 3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이	히 강제로(넓은 의미이
-1.	줄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	든 좁은 의미이든 강제

제3부- 1. 10출 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기계를 바랍당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다. 사람들은 일본군에 '협력'한 '동지'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하위사실이며 '위안부', 고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하기에는 자라를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파해자를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는데 '로 생취를 전체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로 생취를 전체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로 생취를 전체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로 생취를 전체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교해자들의 가슴에 '로 생취를 주는 것인데, 노에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지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해외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번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강간반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돌아오라	성이 범죄임에는 틀림없
제 3 부 - 1. 10줄 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자들을 일본군에 '협력'한 '동지'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맹백한 허위사실이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서자는 '위안부'가 노예이면서 동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 봐도 그 자체로 모순인인이조합입니다. 노예는 상하관계를 전체하고 하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전체하고 하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건체하고 하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건체하고 하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건체하고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근 상취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지이들이 자방적으로 일본 전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해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여성은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강간법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다.)에 의해 자신의 성적
제 3 장 -1. 10줄 합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제 3 브 –	207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체
지 3부- 1. 10출 합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 다. 자들을 일본군에 '협력'한 '동지'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해위사실이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자는 '위안부'가 노예이면서 동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 봐도 그 자체로 모순인인이조합입니다. 노예는 상하관계를 전체하고 하층계급을 표현한 것이므로 동익한 수 없기 때문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전체한 것이므로 동익한 수 없기 때문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전체한 것이므로 동익한 수 없기 때문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가슴에 모면 장비는 자리가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를 유린당하였는데, 피해
해 '동지'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하위사실이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위안부'가 노예이면서 동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 봐도 그 자체로 모순인 언어조합입니다. 노예는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하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인 인어조합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전체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인 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전체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인 다. '위안부' 피해자를 전체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인 다. '위안부' 피해자를 가슴에 그는 '생각를 준한 것 자체 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근 상처를 주는 것인데,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 .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	자들을 일본군에 '협력'
제3부- 208 제3장 쪽 1 -1. 출 *** -1. 출 ** -1. å ** -1. å	1.	102	다.	한 '동지'였다고 표현하
제 3부-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제 3 장 즉 1 -1. 출				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
제3부- 지기 전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기도의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실이며 '위안부' 피해자
제3부- 지기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제3부- 제3장 -1.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독일할 수 없기 때문입 나다. '위안부' 피해자를 전제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로 사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입니다.
지 3부- 2 0 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장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사회적지위를 전제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 조 피해자이가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 다. '무슨 기를 자란되는 마치 다. 보석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저자는 '위안부'가 노예
#도 그 자체로 모순인 언어조합입니다. 노예는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하 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전제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주는 것이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이면서 동지라고 표현하
전이조합입니다. 노예는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하 충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동지는 동일한 사회적지위를 전제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노예'로 표현한 것 자제도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
제3부-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지는 동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건제한 것이므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도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 의 라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지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봐도 그 자체로 모순인
제3부-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국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우) 다. '우) 보고 등일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언어조합입니다. 노예는
지 3부-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지 3장 쪽 1 -1. 줄 기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도 기위를 전체하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명예훼손행위입니다.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하
지 3부- 지 3 장 쪽 1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유인부' 피해자를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층계급을 표현한 것이고
제3부-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				동지는 동일한 사회적
제3부-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 -1. 줄 다. '다. '위안부' 피해자를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 다. '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지위를 전제한 것이므로
제3부-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노예'로 표현한 것 자체 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그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제 3 장 즉 1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 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레이브	200	호크크샤트레트 고려이 이하브키 카드 미스	
다.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노예라고 하면서도 마치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 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 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	2	-1.	- ',
군에게 자신의 성을 바 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 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치며 위로한 동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 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 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 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 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지만, 사회에서 낙오되었 던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u> </u>	
전 강간범에게 성적 위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r - 1 .1 1 .51 - 1 .2 -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동지이자 협력자라고 표
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3부 217 시스템이 비인륜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시스템이 반인륜적 범죄	제3부	2 1 7	시스템이 비인륜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시스템이 반인륜적 범죄

-제3장	쪽 9	비키크 크기된 스 시노 키 스 시나니 "	를 저지른 경우, 이 시스
-2.	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템을 만든 주체가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직
			접적인 '위안부' 모집행
			위를 사인이 했다 하더
			라도, 일본군이 나서서
			'위안부'제도를 고안하
			고 모집을 독려・방치했
TIOH	217	다시 말해 국가로서의 발상과 기획에 대해 책	다면, 이는 형법상 교사
제 3부	쪽	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위안부의 고통이 물리	• 방조죄로서 정범과 똑
- 제 3	1 4	적으로는 업주나 군인에 의한 것인 이상 군인	같은 죄질을 갖는 범죄
장−2.		들의 이용을 국가범죄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그
	줄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를 범죄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에
			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
			게 정선적 고등을 가야 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다 할 것입니다. 점령지의 피해 여성을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도 문
			제 있지만, '위안부' 피해
			자를 군수품이라고 표현
			하는 것은 훨씬 충격적
			입니다. 이는 여성의 성
			을 객체화시키고 상품화
	219		시키는 것으로 우리 헌
			법이 보장하는 10조의
제3부-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	인간의 존엄에 명백하게
제 3 장	쪽	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은 전리품이었다.	반하는 표현행위입니다.
-2.	16줄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지만, 제2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
			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내재적 한계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물건으로 비유하는 것,
	I		

L	1		
-3.	줄	진 법적으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조선인으로	을 인정한다고 표현하고
제 3 장	쪽 6	태를 띠고 있는 한, 그 조약에 의거해 이루어	조약으로 보고 그 효력
제3부-	232	서글픈 사실이지만, 그 조약이 양국 합의의 형	을사늑약을 합의에 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없이 친일파로 매도하는
			국에서 특정인을 근거
			신적 피해를 입었던 한
			입니다. 과거 식민지국가 로서 커다란 물질적·정
			친일파로 낙인찍는 행위
			은 이들을 반민족행위자,
			협력했다고 표현하는 것
			일제의 침략전쟁행위에
			특히 '위안부' 피해자가
			다.
			훼손하는 행위일 것입니
			으도 들어가는 것은 당 백히 피해자의 명예를
			아니라 가해행위의 공범 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
			평하하고 이것을 피해가
			가해자의 성적 도구로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의 침략행위에 '협력'했
			가 '물건'으로써 일본군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
			해자인 '위안부'를 군수
			→ 강간과 학대 등의 피
			은 당연합니다.
			이를 제한해야 하는 것
			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
			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
			수품이나 전리품으로 표

특히 전쟁피해자들을 군

		서의 피해는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 된다.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는 약은 강박에 의한 조약체결로서 국제법상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표현은 대한민국 국민의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서 우리의 사회윤리에명백히 어긋나므로 위에서 언급했던 헌법 21조4항의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표현행위로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제3부- 제 4 장 -1.	2 4 6 쪽 1 줄	그런데 증언 가운데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끔 찍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북한 여성들의 증언이 라는 것은 우연일까.	무책임한 의문제기로 증언의 신빙성 공격, 북한 여성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신빙성을 저해할 요인도 아니거니와, 현재한국 여성들도 끔찍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3부- 제 4 장 -1.	2 4 6 쪽 7 줄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가 '매춘'을 한 여성인 것과 같은 표현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장입니다.
제 3부- 제 5 장 -1. 제 3부- 제 5 장	263 쪽 3 줄 265 쪽 2	또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한일합방이 일본의 국민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었던 이상 '일안부' 동원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없는 일이다.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저자의 친일본(친식민 지)적인 성향을 보여주 는 표현입니다. 피해자를 동지로 표현하 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
-2. 제3부- 제 5 장 -2.	줄 265 쪽 19줄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 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 문이었다.	어서는 끔찍한 명예훼손 입니다. 더불어 이는 피 해자 개인이 아닌 침략 당한 피해자 국가 전체 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입니다.
제4부- 제 1 장 -3.	288 쪽 5 줄	가난한 자원병들은, 처음부터 신체 자체, 생명 자체를 국가에 저당잡힌 존재들이기도 하다.	'위안부'가 가난한 사람 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신의 신체를 팔게 된 것

			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
			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4 부 –	288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 4 구 제 1 장	² 0 0	일본의 패전 직후나 한국전쟁 때와 같은 일은	어디에든 반복될 수 있
-3.	기 12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_s.	12물		발언입니다.
제 4부-	291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	
제 2 장	쪽 6	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	'위안부'문제를 매춘의
-1.	 줄	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	형태로 표현입니다.
		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제 4부-	291		'위안부'문제의 강제성
제 2 장	쪽	(업자나 위안부 자신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	10줄		
제 4 부 –	291		정확한 근거 없이 주장
제 2 장	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가 전체 위안부의 '대부	을 하면서 조선인 '위안
-1.	11줄	분'이라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부' 피해자 문제를 축소
제 4 부 –	291		하려고 합니다.
제 4 구 -	쪽	군이나 경관에 의한 '강제연행'은 증언을 그대	
	ㅋ 23줄	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오히려 극소수이다.	
−1. 제 4 부 −	23 2	이들은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중간업자에 의해	
제 2 장	쪽 2	이미 포주와의 계약관계에 있었고, 그 때문에	
-1.	̄ ̄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당했다.	
제 4 부 –	294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일본군 '위안부'를 가해
제 2 장	쪽 5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1.	줄	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 4부-	294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국가의	
제 2 장	쪽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	
-1.	16줄	문이다.	
제 4부-	294	'조선인 위반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	
제 2 장	쪽	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1.	22줄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강제적 끌	(4) (4) (4) (4) (4) (4) (4) (4) (4) (4)
제 4 부 –	295	어간'존재이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 중 매춘
제 2 장	쪽 7	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	
-1.	· 줄	한 어린소녀'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	
	_	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	이 사용합니다.
		부'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제 4부-	295	그것은 우리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	
제 2 장	쪽	은 피해자로서의 욕망이 시키는 일이지만, 표	
-1.	10줄	면적인 모습이 '완벽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다 해도 그들 역시 피해자이고 희생자였다.	

			이번그 '이라비'로 이렇
제 4부-	296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활동이 잘못된 이미지를
제 2 장	쪽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1.	19줄	무관하지 않다.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 '위안부'와 조
제 4 부 –	296	하지만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지 않으	선인 '위안부'를 구별해
제 2 장	쪽	려 했던 그 시간들은 '한국인 위안부'와 다른	서, 한국인 '위안부'의 피
-1.	22줄	나라 '위안부'와의 차이를 소거해버린 시간이기	해자성을 소거하려고 하
		도 했다.	고 있습니다.
제 4 부 –	298	문제는 네덜란드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 역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제 2 장	쪽 5	·적'의 관계였다는 점이다.	를 전쟁의 가해자처럼
-1.	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4부-	300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정대협의 운동은	
제 2 장	쪽	'여성의 인권 문제'를 기치로 하고 있다. 그러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2.	· 18 줄	나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표현입니다.
		제기는 없었다.	
TIAH	201	그것은 일본의 진보가 꿈꾸었던 '일본 사회의	
제 4 부 –	301	개혁'과 통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제 2 장	쪽 4	운동도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 '진보'가 세상	정대협의 활동 내용을
-2.	줄	을 바꾸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중점이 두어져	마치 정치적, 특히 진보,
제 4 부 –	3 0 1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좌파라고 평가하여 폄훼
제 2 장	쪽	정대협의 북한과의 연대는 '민족'으로서의 연대	하고 있습니다.
-2.	· 22줄	라기보다는 실은 '좌파'로서의 연대였다.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	
제 4부-	306	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 4 구 - 제 2 장	3 U B 쪽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	에 협력한 것으로 표현
		을 토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	하고, 소녀상을 폄훼하고
− 2.	10줄	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	있습니다.
		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뿐이다.	
제 4 부 –	306		일본군 '위안부'가 경제
제 2 장	쪽	그녀들은 '이동'에 의해 경제력을 갖춘 주체로	활동을 위해 스스로 참
-2.	20줄	재주체화했다.	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자군에 기생하는 행태로 일본인의 상업활동	
		이 형성되고/되어, 발전을 이루었"고 그중에서	
제4부-		도 "기모노집, 일상잡화집, 여관업, 의사, 그리	
제 2 장	쪽	고 사진업, 세탁소 등, 모두 낭자군의 번영에	주의를 강화시키는데 도
-2.	14줄	'기생'하는 형태로 발생한"(야노 도루, 43쪽)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상권이 머지않	있습니다.
		아 타국의 토지와 제도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	

		게 되는 것이 제국주의였다는 점에서, 낭자군	
		들은 무의식적인 제국주의자들이기도 했다.	
THAH	0.0.0	최근 들어 그 중에는 전부가 조선인은 아니었	스스로의 주장을 바탕으
제 4 부 –	308	다는 인식도 내놓고 있지만, 정대협이 인식의	로 말을 하면서 정대협
제 2 장	쪽	변화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수정한 적은 한 번	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
− 3.	17줄	도 없다.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4부-	308	2013년 1월에 이루어진 뉴욕 주 상원 결의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
제 2 장	쪽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3.	19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협은 '아시아'의 '위안소'가 똑같이 여성들	
제 4부-	310	을 '강제로 끌어간'곳으로 생각해서 이 프로젝	
제 2 장	쪽 3	트를 추진한 것이겠지만, 당시에 싱가포르에	
	ᆿ 3 줄	가 있었던 조선인 여성은 '일본 제국'의 일원이	
−3.	百	었다태평양전쟁 때의 조선인이란 '일본인'이	
		고 자국을 침략한 적국의 여성일 뿐이었다.	
		조선부 위안부들은 일본인 위안부들에게 차별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제 4부-	3 1 0	을 당했지만, 냄새난다는 이유로 대만인을 싫	않을 채, 조선인 '위안부'
제 2 장	쪽	어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여성들을 차별	에게 다른 나라의 여성
-3.	16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을 차별하는 존재의 이
			미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제 4 부 –	3 1 0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제 2 장	쪽	위안부'는 한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기림'을 받	
−3 .	22줄	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다.	
제 4부-	3 1 1	한국의 욕망이 투영된 '피해자이자 투사'로서의	
제 2 장	쪽 4	'민족의 딸'을 보는 일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3.	줄	'적의 여자'이기도 했던 일을 잊는 일이기도 하	
제 4 부 –	3 1 2	다.	
제 2 장	쪽 7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	
−3 .	'' 줄	인 위안부도 많다.	
<u> </u>	_		일본군 '위안부'들이 정
			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
			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
후기		그러나 위안부 지원(위안부들은 정부의 '인정	해, 현재의 '위안부' 지원
	319	급'과 생활지원을 받고 있어서 생활이 비교적	활동(일본의 배상과 사
	쪽	안정적이라고 한다), 박물관 건립 등 그동안	과를 촉구하는 활동 포
	ㄱ 17줄	이어져 온 '모금'과 '기부'운동에 수많은 일본인	함)의 필요성을 격하시
		들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키는 주장을 하고 있습
		아닐 수 없다.	니다. 또한 일본군 '위
			안부'지원 활동은 일본
			전부에 대해 비판적인
			[16T에 네에 비현직인]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관심과 도움을 주는 일본인과는 연계하고
		31 21-5	있다는 점을 오히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후기	320 쪽 2 줄		지금까지 정대협이 이룩 한 성과는 무시하면서, 정대협 활동 전체를 폄 훼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 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이 사건 도서는 '위안부'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또는 논평의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

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 45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된 표현의 내용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이 사건 도서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들의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

가) '위안부는 모집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매춘을 한 것이다.'

피고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매춘을 하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명제는 입증 가능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해당합니다.

설사 위와 같은 표현들이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한 표현이고 독자는 반복적인 주입을 통해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받게 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 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33쪽 7줄)
-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112 쪽 15줄)
-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 정 강간**'이었다. (120쪽 19줄)
- 말하자면 아시아 각지에 존재했던 매춘시설이 모두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은 아니다. 여러 종류의 '공창'과 '사창'이 존재했고, '일본군'이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병사들이 이용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군이 허가한 '공창'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중국 등 전쟁을 한 점령지에는 여성에 대한 '강간'도 많았지만, 이런 식의 '공창'에 있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다

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성들을 똑같이 '위안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37쪽 19줄)

-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46쪽 7줄)
-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291 쪽 6줄)
- (업자나 위안부 자신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291쪽 10줄)
-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강제적 끌어간'존재이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일본군이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한 어린소녀'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부'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295쪽 7줄)
-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296쪽 19줄)
- 2012년에 '위안부'대신 '성노예'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성노예를 자신의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31쪽 4줄)
- 그러나, 70세가 되어가도록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가 깊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직시하고 넘어서는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134쪽 13줄)

나) '위안부는 일본군의 동지이자 협력자이다.'

피고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피해자가 일본군의 협력자이자 동지였고, 일본 제국에 애국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위안부는 일본군에 협력하거나 일본제국에 애국한 동지가 아니며, 이는증명 가능한 문제로써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55쪽 목차)
-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37쪽 3줄)
-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37

쪽 6줄)

- 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19쪽 8줄)
-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19쪽 11줄)
-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99쪽 5줄)
-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160쪽 10줄)
-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궁지 자기 존재의 의의, 숭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궁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160쪽 18줄)
-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 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돌아 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207쪽 3줄)
-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207쪽 10줄)
-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208쪽 1줄)
-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265쪽 2줄)
-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 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265쪽 19줄)
-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294쪽 5줄)
-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쪽 12줄)
-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는 그 역할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 (31쪽 19줄)
- 혹독한 체험을 한 이들에게도 **'즐거웠던'순간은 없지 않았고, 군인에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위안부'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개미'같은 처지임을 **서로 민감하게 감지한 고독한 남녀**이기도 했다. (76쪽 1줄)
- 앞서의 센다는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권태감을 풀어주기 위해 부대가 주관해서 운동화를 열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위안부들이 운동회를 몹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 중략

··· '위안부'들의 순수한 기쁨의 기억을 외부자들이 소거할 권리는 없다. (72쪽 14줄)

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1)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 박유하는 특정 개인이 아닌 '위안부'전체 대한 명예훼손,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 35199 판결 참조).

피고 박유하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대상인 '위안부'피해자는 그 구성원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의 피해를 기준으로 한 피해자 집단이므로 그 구성원이 변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피해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성을 제공한 매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허위사실 이지만, 허위 여부를 떠나서 특정한 사람들이 매춘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는 이미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피해자들을 일본군의 협력자, 동지,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군은 전쟁범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피해자를 일본군의 협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고들을 전쟁범죄에 가담한 자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1)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①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②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 에 위법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판례에 의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박유하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겠습니다.

2) 진실한 사실이 아님

가)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 여성들은 당시 강제1)로 일본군 '위안부'가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위안부'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일본 군인들의 증언과 기록, 외국의 공문서의 기재 등으로부 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 피해 여성들의 증언

필리핀의 마리오 로사 루나 헨슨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증언과 중국인 위안부들이 일본에서 세 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u>일본법원에서</u> 일본군에 의한 감금·강간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사실 등 <u>위안부 피해자들의 중</u> 언으로부터 당시 위안부들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 일본 군인에 의한 증언과 기록
- a. 당시 대위였던 나가사와 겐이치는 여성의 성병검사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위법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 습니다.
- b. 중국 군의가 중국에서 여성을 군위안부로 만들기 위해 성병검사를 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부터도 군에 의해 위안부가 설치되었음을 보 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 c. 주계장교였던 사카베 야스마사는 인도네이사 암본섬에서 있었던 강 제연행과 강제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¹⁾ 여기서의 강제는 좁은 의미의 강제와 넓은 의미의 강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 (3) 외국 공문서의 강제성 기술
- a.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 자료인 '일본인 포로 심문 보고' 49호에는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들을 유괴와 인신매매로 끌고 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b. 극동국제군사재판 증거자료와 판결에도 일본 육군 중위가 여성들을 유괴하여 위안부피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c. 이 외에도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공표한 문서들로부터 당시 위안부여성들이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령 동인도 스마랑에 강제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1994년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 외에도 8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 (4) 당시 한국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는 것에 대해 육군과 내무성이 '엄중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위안부 모집 시 군이 통제하고 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관련 지역의 헌병·경찰과 긴밀하게 연계하였습니다.
- 나) 위안부는 비참한 대우를 받은 성노예였고 성범죄 피해자입니 다

피고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서 '위안부'가 공창제도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창제도 아래에 있던 여성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속아서 따라갔거나 인신매매에 의해 끌려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 박유하는 '위안부'로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지만, 많은 '위안부'피해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가 사실상의 성노예 제도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 ① 1924년 1월 와세다대학 교수 아베 이소오 등이 제출한 「공창제도 폐지 청원서」는 "공창제도는 사실상 전율스런 인신매매와 참담한 노예제도를 동반한 벗어날 수 없는 나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② 1930년 12월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는 "공창제도는 인신매매와 자유구속이라는 2대 죄악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의 노예제도"라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박유하는 '위안부'가 매춘업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안부'의수입이 좋았다고 표현하지만, 결코 '위안부'의 수입이 좋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의 실제 수입은 보통 1개월에 600-750엔이었습니다. 당시육군 대장의 연봉은 6,600엔이므로 액면가는 '위안부'의 연봉이 더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지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전쟁지와 일본 국내의 통화거래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의 수입을 액면 그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기존 통화가 아니라 군표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액면가대로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안부'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을

일본군에게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것이지, 그로 인하여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간범이 강간 후 피해여성에게 돈을 주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피고 박유하의 표현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한 것처

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증언만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전체 '위안부'피해자의 증언을 대표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로서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훨씬 많으며, 이는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료도 아닌 소설을 통해서 '위안부'가 행복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사람으로서의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즉 피고 박유하는 '위안부'가 고통을 겪었다는 수많은 증언들은 모두 무시한 채 일부의 증언, 일부의 소설, 빈약한역사적 사료들을 근거로 '위안부'피해자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군의 협력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4)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판례에 의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

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피고 박유하는 이 사건 도서에서 겉으로는 일본과의 화해를 내세우고 있어 마치 자신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골고루 고려된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민지배 문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전쟁범죄, 대량학살범죄,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행위 등을 사과하고 보상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화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박유하는 식민지시대 일본제국으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을 피해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매춘이자침략범죄의 공범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만반영된 것으로서,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화해의 방식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로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인 일본이 자신의 구체적인 가해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식민지국가였던 한국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화해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공감하는 화해와 갈등해결의 방식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는일본이 '위안부'문제를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해결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은 2007년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제로 강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일 것과 피해자에게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수탈 및 인권유린행위가 당시에는 적법했다든지, 피해자들은 제국의 일원으로서 전쟁범죄에 가담했다든지 하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화해의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가해자의 일방적·강압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미쓰비시강제징용 판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에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판례는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103조에 위반하므로 우리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박유하의 기술은 진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그러나 학문연구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 등을 통하여 발표됨

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7648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표현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 21조 제4항)와 학문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도 넘어선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 피고 정종주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고 정종주는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제작, 배포, 판매하였으므로, 피고 박유하의 명예훼손에 가담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 정종주는 이 사건 도서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박유하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피고 정종주의 출판행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정종주의 출판행위와 피고박유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 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 정종주는 이사건 도서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원고들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우선 원고 1인당 금 3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6. 결론

원고들은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피해자 생존자이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을 겪은 고령의 할머니입니다. 이들에게 따뜻 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지는 못할지언정, 전파력이 강한 출판물을 통해 이들이 사실은 매춘을 했으며 전쟁범죄의 가담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 리면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너무도 잔인한 일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억울한 마음을 달리 해소할 길이 없어, 직 접 법원에 법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립용

열림용

입 증 방 법

1.	갑 세1호승의 1	[세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2. 갑 제1호증의 2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3. 갑 제1호증의 3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4. 갑 제1호증의 4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5. 갑 제1호증의 5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6. 갑 제1호증의 6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7. 갑 제1호증의 7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8. 갑 제1호증의 8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뿌리와이파리,2013.8.12.)
- 9. 갑 제2호증 '제국의 위안부(박유하지음,2013)의 문제점과 법적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014.06.1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홍장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